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클린클래스(종류 AG, CG)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8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 AG : BV519 종류 CG : BV520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11. 종류 A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2. 종류 C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11. 종류 AG 수익증권 12. 종류 CG 수익증권
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AG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3.00 2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3.10 3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0 [종류CG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3.00 2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5.20 3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0
제40조 (판매 수수료)	제2항 <추가>	제2항 3. 종류 A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% 이내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C2~C4, C-F, S, W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C2~C4, C-F, S, W, AG 및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G, CG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AG BV519 CG BV520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G, CG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AG BV519 CG BV520
제 2 부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

<table>
<tr><td>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(추가)</td><td>2017년 08월 24일
- 클린클래스(종류 AG, CG)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AG, CG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table>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A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C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- (생략)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 기간은 3 년이상입니다.</td>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- (생략, 현행과 동일) <삭제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AG, CG 신설></td>
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
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A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CG</td><td>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AG, CG 신설>

주)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%이내(종류 A-E 는 0.5% 이내)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종류형</th><th rowspan="2">지급시기</th></tr>
<tr><th>종류 AG</th><th>종류 CG</th></tr>
<tr><td>선취판매수수료</td><td>납입금액의 0.5%이내</td><td>없음</td><td>매입시</td></tr>
<tr><td>후취판매수수료</td><td colspan="2">없음</td><td>환매시</td></tr>
<tr><td>환매수수료</td><td colspan="2">30 일미만: 이익금의 70%
30 일 이상 90 일미만: 이익금의 30%</td><td>환매시</td></tr>
</table>
주) 판매수수료는 상기 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.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.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AG, CG 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AG, CG 신설></td>
<td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<tr><th>종류 AG</th><th>종류 CG</th></tr>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0.3000%</td><td>0.3000%</td></tr><tr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0.3100%</td><td>0.5200%</td></tr>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300%</td><td>0.0300%</td></tr><tr><td>일반사무관리보수</td><td>0.0200%</td><td>0.0200%</td></tr><tr><td>보수합계</td><td>0.6600%</td><td>0.8700%</td></tr>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<tr><td>총보수및비용</td><td>0.6600%</td><td>0.8700%</td></tr><tr><td>합성총보수및비용</td><td>1.9600%</td><td>2.1700%</td></tr>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<tr><td>종류AG</td><td>250</td><td>680</td><td>1,154</td><td>2,564</td></tr><tr><td>종류CG</td><td>222</td><td>701</td><td>1,229</td><td>2,797</td></tr>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td>
<td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(추가)</td>
<td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</td>
</tr>
</table>

		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아름다운실버배당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-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8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	**보수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투자전략** **4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5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생략)	**[1]투자전략** **4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5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

구의 투자정보	**2.위험등급**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28%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2.위험등급**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24%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8월 24일 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-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나. 투자제한 <한도초과>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,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5 호 내지 제 9 호,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나. 투자제한 <한도초과>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,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5 호 내지 제 9 호,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
제2부 집합투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

자기구에 관한 사항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28%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24%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(추가)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

		다. - 지상권・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・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・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(순차적 연번 변경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 : 해지된 자투자신탁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8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3. 하나UBS중소형&배당증권자투자신탁[주식]	제3항 3. <삭제>